

● 제27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7 9. 4.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호근 의원 외 23명 발의】

의안번호 2082

I. 구성결의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발의자 : 박호근 의원 외 23명
- 나. 발의일 : 2017. 8. 31.
- 다. 회부일 : 2017. 9.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교육 문제 논의의 새로운 주체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을(자치구)과 학교의 협력은 필수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마을결합형학교’ 등 마을과 학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로 이원화·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 협업 시스템 구축·보완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교육4주체라 할 수 있는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간 협력과 연계를 근간으로 삼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마을)가 협력 사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서울시의회는,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사업이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3)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¹⁾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으로 이원화·분업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4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벽을 허물어 5대 비전, 20대 교육협력 사업²⁾을 실현하는 내용의 ‘글로벌 교육 혁신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 있음.
 - 이 선언을 통해 학교 안은 교육청, 학교 밖은 서울시가 전담하는 역할 구분 없이, 양자간 협의한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지자체-교육청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였음.

〈표-1〉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민과 관이 협치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2. 소외받는 어린이 청소년이 없는 어린이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3. 교육개혁과 학교혁신으로 21세기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4.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인 시대를 열겠습니다.
5. 서울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구성됨.
2) ①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②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③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 마을 상생, ④ 공교육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총 4개 분야로 ‘15년 20개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총 2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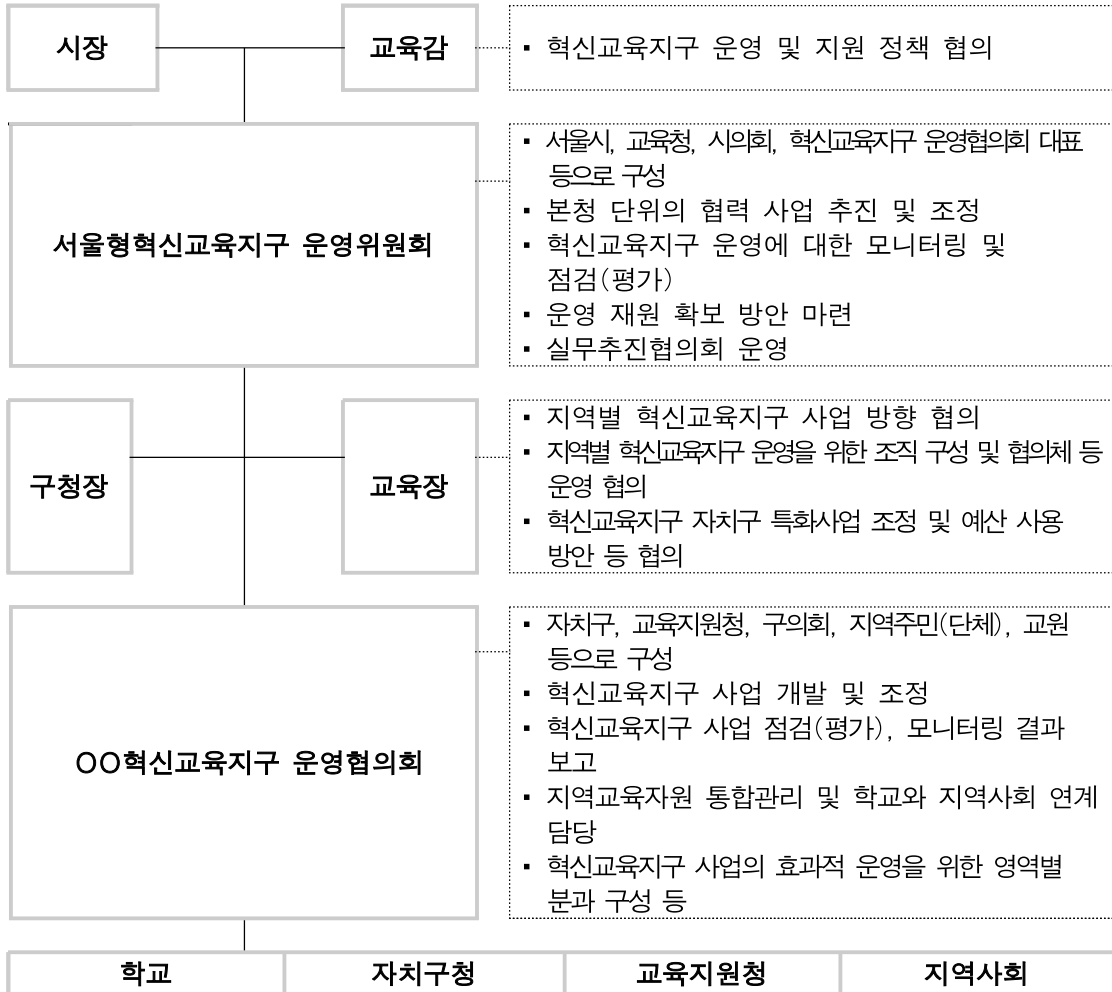
- 또한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였음(참고자료. 1).

〈표-2〉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주요 추진 경과

2017년	←	2016년	←	2015년
22개구 (기존20, 신규2)		20개구 (혁신12, 우선4, 기반4)		11개구 (혁신7, 우선4)
322억원 (시92, 교102, 구128)		279억원 (시89, 교90, 구100)		152억원 (시65, 교52, 구35)

- 혁신교육지구의 필수사업은 마을-학교 연계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사업 등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특화사업(선택과제)이 추진되고 있음.
-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하는 혁신교육지구는 교육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제고 등을 위해 직접 당사자인 학교와 교사는 물론 민·관·학 거버넌스의 협력적 작동이 중요함.
- 그러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학교 및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합미흡, 사업의 공통적인 목표·방향 제시의 어려움, 이질적 행정기관으로 인한 실무 운영의 문제, 교육주체 간 소통의 어려움의 문제 등으로 인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를 흐리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있어왔음.

〈표-3〉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추진체계



○ 따라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학 거버넌스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교육과정의 다각화 및 지역 특성화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동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관련 상임 위원회에 의견 조희한 결과(참고자료 2),
 -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교육재원 보조 외에 교육청의 교육방식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치구(구청장)와 교육감에게 서로 협력 하도록 하는 권한도 없는 바,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영역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신함.
 - 교육위원회는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운영에 있어 교육위원회 정례회 기간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일정조정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회신함.

참고표 1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 ◆ 2017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2개로 확대 운영
- ◆ 혁신교육지구 미 참여 자치구(3개)에 대한 마을결합형학교 지원 확대

□ 사업 개요

○ 목적

-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 교육청, 시, 자치구, 학교 지역주민의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협치

○ 근거

- 혁신교육지구 추진 기본계획수립(교육감 결재, 2012.07.09.)
-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시교육감-서울시장 공동선언 (2014.11.17.)
-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교육감결재, 2017.2.2.)

○ 관련 조례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2016.12.29.제정)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1.5.제정)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확대

- 2015년 11개 → 2016년 20개 → 2017년 22개(신규:용산구, 서초구)
- 혁신교육지구 사업 내에 마을결합형학교 통합 운영

○ 혁신교육지구 미 참여 자치구(3개)에 대한 마을결합형학교 지원 확대

- 교육지원청 주도의 학교-마을 연계 사업 확대 및 강화

※ 혁신교육지구 미 참여 자치구(3개) : 강남구, 송파구, 중랑구

	2015년 지정		2016년 지정			2017년 지정	
	혁신지구형	우선 지구형	혁신지구형	우선지구형	기반구축형	지속운영 자치구	신규지정
자치구	금천구, 은평구, 도봉구, 구로구, 관악구, 노원구, 강북구(7개)	종로구 (1개)	강동구, 동작구,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 (5개)	강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3개)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중구 (4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강서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중구 (20개)	서초구, 용산구 (2개)
필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 감축 사업(중) ▶ 진로 직업교육 지원 사업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지원사업 ▶ 청소년 자치 및 동아리 지원사업 ▶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학교 연계 지원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 ▶ 청소년 자치활동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운영예산	서울시 7.5억 교육청 7.5억 자치구 5억 (총 20억)	서울시 3억 교육청 5천 5천 (총 3.5억)	서울시 5억 교육청 5억 자치구 5억 (총 15억)	서울시 3억 교육청 2억 자치구 5억 (총 10억)	교육청 1억 자치구 2억 자치구 2억 자치구 2억 (총 3억 이상)	서울시 평균 4억5천 교육청 평균 5억 자치구 평균 5억 (총 14억5천 내외)	교육청 1억 자치구 1억 자치구 1억 (총 2억)
지정기간	2년(2015년~2016년)		1년(2016년)			2년(2017년~2018년)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학거버넌스 구축·운영	연중	거버넌스 협의체 132개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개발	연중	55개

□ 추진 실적

세부사업명	목표	실적(비율)	비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운영	거버넌스 협의체 132개	170개(129%)	중앙협의체 2 지구별 협의체 168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 과정 개발	55개	추진 중	

-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필수 과제 운영
 -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129개 사업)
 - 마을방과후활동 체제 구축(109개 사업)
 - 청소년 자치활동(81개 사업)
 -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85개 사업)
 - ※ 기타 : 지역특화사업(182개 사업)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협력 주관 사업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워크숍 1회 실시 ('17.1.18.)
 - 자치구 담당자 협의회 ('17.3.3.)
 - 중앙운영위원회 2회 실시 ('17.3.22. 6.28.)
 - 중앙실무협의회 5회 실시 ('17.2.23. 3.30. 4.20. 5.25. 6.29.)

- 컨설팅 / 정책 포럼 / 중가평가 TF 운영 ('17.4월~7월)
- 혁신교육지구 미 참여 자치구 대상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
 - 강남, 송파, 중랑 3개 자치구 소재 학교대상 지원
 - 마을결합형학교 중앙 실무지원단 구성 추진 중
 - 마을결합형학교 역량 강화
 - 마을결합형학교 원격연수 1회 실시('17.2월)
 - 마을결합형학교 담당자 워크숍 1회 실시('17.4.6.~7.)
 - 마을결합형학교 자료집 개발·보급
 - 마을결합형학교 마을자원자료집 제작·보급 ('17.2월)
 - 마을결합형학교 교육과정 자료집 개발 추진 중
- 마을결합형학교 원격연수·직무연수 : '17.6월~7월

□ 추진 일정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정책포럼 : '17.8월~11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컨설팅 운영 : '17.8월~10월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중간평가 실시 : '17.11월
- 마을결합형학교 원격연수 : '17.10월, 12월
- 마을결합형학교 담당자 워크숍 : '17.9월
-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발표회 : '17.12월
- 마을결합형학교 자료집 보급 : '18.1월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작성기준일: '17.7.31.)

사업명	소요예산			'16 최종예 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 액	지출액	원인행위 액	지출액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10,403,290	1,800,000	12,203,290	9,127,630	10,713,781	10,660,623	87.79	87.36
마을결합형학교운영	255,620		255,620	403,640	155,171	155,194	60.70	60.71
계	10,658,910	1,800,000	12,458,910	9,531,270	10,868,952	10,815,817	87.2	86.8

참고표2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행정자치위원회>

- 구성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혁신사업이 마을(자치구)과 학교(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운 교육방법 실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서울시(평생교육국)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자치구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방식(교육 혁신사업, 마을형결합학교)의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교육재원 보조 외에 교육청의 교육방식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거나,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평생교육국이 자치구(구청장)와 교육감에게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권한도 없으며,
- 특별위원회의 목적(교육방식의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 마련)과 활동영역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의회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교육위원회>

- 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나, 운영에 있어 교육위원회 정례회 기간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일정을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위원장의 요청이 있음.